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5098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5098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2085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4. 5.

판결 선고 2024. 4. 1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2085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허일승

판사송승훈